

2009. 2. 26. (목) 10:00

제157회 거창군의회(임시회) 제2차본회의

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
및 운영조례안
[심 사 보 고 서]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

구성 및 운영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. 02. 13.

나. 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. 02. 25(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
라. 의안번호 : 제2009 - 4호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정이유

- 개정된 「교통안전법」에 따르면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·시행계획을 심의 하기 위하여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되,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
- 구 「교통안전법」(법률 제7516호) 제13조 규정에 따라 거창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거창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」을 폐지 하고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(안 제1조)
-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.(안 제2조)
 - 위원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등을 심의·의결함.
-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)
 - 구성 :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
 - 위원장 : 군수, 부위원장 : 위원 중에서 호선
 - 위 원 : 군 소속공무원, 군의원 등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장과 관할 운수단체 지부장 등 관계전문가
 - 임기 :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
 - 회의 : 위원장이 소집하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경미한 안전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의안처리 가능함.
 - 전문위원, 간사 및 서기 등 직책 설치
 -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·연구하기 위해 위원장의 위촉으로 3명 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.
 -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둠.
 - 수당 등 :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개정된 「교통안전법」에서 군수 소속 하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교통안전에 관한

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종전의 「교통안전법」에서 규정한 「거창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」을 폐지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,

그 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